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10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권성동·강승규·이만희

김장겸 • 엄태영 • 김상훈

윤한홍 • 한기호 • 최은석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으로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 및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행위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한다.
- ③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심의·의결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4.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회계에 관하여 전문지 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는 등 전

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④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알릴 때에는 당사자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등의 답변은 당사자등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공무원이 당사자등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

4.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참여하 게 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④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알릴 때에는 당사자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등의 답변을 조서에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등의 답변은 당사자등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공무원이 당사자등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하거나서명하게 하여야 한다.